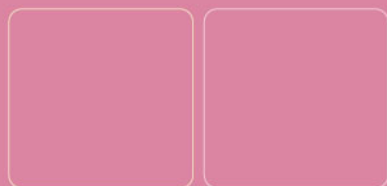


호주의 보육정책

| 서문희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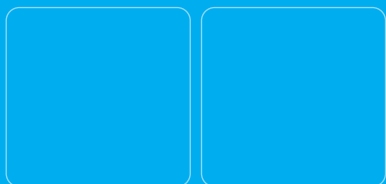


호주의 보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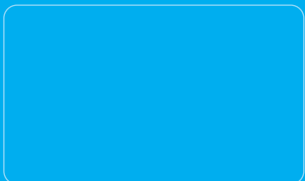
| 서문희 편역

호주의 보육정책

| 서문희 번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 일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소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호주의 보육정책을 시작으로 여타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장

호주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 • 04
2. 인구 • • 05
3. 출산율 • • 07
4. 여성취업률 • • 08
5. 육아 및 가족 지원 제도 • • 09

2장

보육 관련 법 · 제도

1. 관련법 • • 11
2.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요 • • 11
3.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 • 14
4. 주요 사업 및 예산 • • 15

3장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보육서비스 • • 17
2. 보육서비스 이용 • • 27
3. 이용 비용 • • 33
4. 보육인력 • • 36

4장

호주의 육아비용 지원

1. 육아재정 지원 개요 • • 41
2.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 • 44
3. 보육조세환급(Child Care Tax Rebate, CCTR) • • 53
4. 기타 추가 지원 • • 54

5장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1. 국가기준 • • 56
2. 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체계 • • 61

6장

맺는 말 • • 74

참고 문헌

• • 76

부록

• • 77

호주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국민은 애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이 원주민이지만, 전후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65만 명의 난민을 비롯해 650만 명 이상의 이민이 호주로 이주해 왔고, 따라서 호주의 인구는 기존의 7백만 명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호주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중 약 1/5이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 이러한 호주의 이민자들은 유용한 언어 등 여타의 역량을 갖추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환경에 맞는 노동자원으로 아시아와 서구의 두 가지 환경에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호주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민 1인당 GDP는 2006년 34,000달러¹⁾ 정도이다.

2. 인구

호주의 전체 인구는 2004년에 2,000만 명을 넘어서서 2006년 현재 2,060만 명 수준이며, 인구의 98% 이상이 백인이다.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 수준으로 출산율 하락에 의하여 약간씩 감소해 왔다.

1) 이하 언급되는 단위는 호주달러(AUD)임.

〈표 1〉 호주의 전체 인구 및 0~14세 인구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18,311	18,518	18,711	18,926	19,153	19,413	19,641	19,873	20,092	20,340	20,605
0~14세	21.4	21.2	21.0	20.9	20.7	20.5	20.3	20.0	19.8	19.6	19.3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7), Australian Social Trends 2007.

인구증가율은 연 약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인구의 50% 이상이 이민에 의한 것이다. 호주 교민도 약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대부분은 대륙의 남동지방, 동쪽 해안, 남서지방의 도시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대륙의 약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구의 84%가 살고 있다.

〈표 2〉 호주의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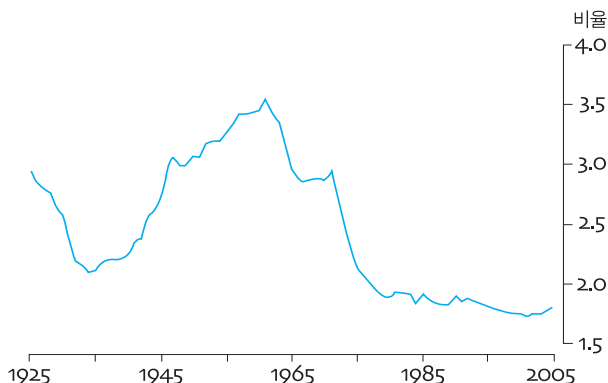
연도	전체 인구 증가	출생	사망	자연 증가	순이민 유입자	인구 성장률	전체증가 대비 순이민유입자 비율
1994	239.0	250.4	126.4	124.0	104.1	1.32	43.6
1995	206.9	253.7	127.3	126.4	87.1	1.13	42.1
1996	193.7	249.1	129.3	119.9	79.2	1.05	40.9
1997	214.6	250.0	128.3	121.7	96.5	1.15	45.0
1998	227.5	249.3	128.4	120.9	107.3	1.2	47.1
1999	259.9	247.5	128.9	118.6	135.7	1.36	52.2
2000	227.7	247.4	130.3	117.2	110.6	1.17	48.5
2001	231.7	247.4	132.2	115.2	116.5	1.18	50.3
2002	218.9	252.1	133.2	118.9	100.0	1.10	45.7
2003	248.3	255.8	131.4	124.5	123.8	1.24	49.9
2004	265.7	264.3	133.1	131.2	134.6	1.31	50.6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7), Australian Social Trends 2007.

3. 출산율

1948년~1961년의 베이비붐세대에 전체 출산율은 3.6명에 달했으나 점차 떨어져 지난 1998년은 최저치인 1.74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결혼율이 낮아지고 결혼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호주의 청년층 중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수가 점차 늘어나, 25세 기혼 여성의 비율은 1972년 83%에서 1991년 47%로 매우 낮아졌다. 출산 시기도 계속 늦어져 24세에 출산을 한 여성 비율은 1971년 67%에서 1991년 25%로 낮아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여 현재 40세의 무자녀 여성은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호주의 출산율(1925~2005)

4. 여성취업률

2004년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55.6%로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45.6%이고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71.3%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4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50% 미만으로 지난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호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994~2004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여성 취업률	0~4세 자녀를 둔 여성 취업률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 비율
1994	52.2	46.1	42.2	74.9
1995	53.2	49.3	42.6	74.5
1996	53.8	47.4	42.6	74.5
1997	53.8	47.7	43.1	73.6
1998	53.6	48.2	43.5	73.3
1999	53.8	47.1	43.6	72.7
2000	54.3	49.3	43.8	73.2
2001	54.9	50.0	43.6	72.2
2002	55.1	49.3	45.3	71.5
2003	55.9	50.0	45.8	71.5
2004	55.6	47.5	45.6	71.3

자료 : OECD(2006), Start Strong II.

2007년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에 따르면, 특히 영유아를 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은것으로 보고되어,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4.5%는 전일제 근로자이고, 32.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또한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1.6%는 전일 근로자이고, 30.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5. 육아 및 가족 지원 제도

호 주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므로 보육정책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산한 여성들은 직장의 동의하에 단지 17~38%만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유급 출산휴가는 평균 8주이다. 2004년 7월에 가족지역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CS)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모성수당(Maternity Payment)을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의하여 초기에 아이를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3,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점차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2008년에 5,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1994년부터 52주의 무급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유급 육아휴직은 공공 부분에서는 도입되었으나, 민간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기업별 유급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보육정책은 비록 서비스 공급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부모보조금을 지급하고, 취업한 부모를 대상으로 조세환급 제도를 통하여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국가 기준과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급여 지원은 순수한 서비스

에 대한 이용시간에 국한되어 있고, 급식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 인프라의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고 다수가 시장에 맡겨져 있다. 또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보육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모든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가구소득의 15% 이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정책으로는 보육과 유아교육 이외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와 연계한 급여제도(Family Tax Benefit)를 통해 제공된다. 이 제도는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A형은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다른 소득보조 급여액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며 수령액은 가족의 연간 소득, 18세 미만 자녀수와 18~25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결정된다. B형은 16세 이하(학생은 18세까지)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 취업하는 경우가 급여 대상이다. 한부모 가정은 급여의 최대액을 적용받지만, 두부모 가정은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아동 5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나누어 상한선을 달리하여 급여기준액이 결정된다.

보육 관련 법 · 제도

1. 관련법

호 주 영유아보육법(Child Care Act 1972)이 보육 ·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며,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 가족지원법(Family Assistance Act 1999)도 보육 · 교육관련 규정을 갖고 있으며 보육관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1972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수정되었다.

2.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요

호 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행

정체계 역시 나누어져 있다. 유치원은 초기 아동발달 이론이나 유럽에서의 유치원 설치 운동의 영향으로 일찍이 1890년대부터 설치되어 주로 아동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일하는 부모의 자녀 보호와 그들의 자녀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²⁾가 보육 주무 부처이고,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유아교육 담당 부처이다.

최근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경계가 다소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기존 활동을 극대화하고 이원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 영유아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를 구축하여 중앙 및 연방정부 관련부서가 상호협력하고 있고, 일부 연방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위원회(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를 설치하여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OECD, 2006).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FaHCSIA)는 소득 지원, 주택 정책, 지역사회 지원, 장애인 지원, 보육서비스, 가족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 관련 조직은 아동 보육의 질(Child Care Quality and Compliance), 아동 프로그램 지원 및 시행 관리(Children's

2) 종전 FaCS에 Housing이 추가되어 부처의 명칭 및 약자가 변경되었음.

Program Support and Performance Management), 아동보호 프로그램(Child Care Program), 아동보호정책 및 정책 프로그램(Child Care Policy and Children's Policy and Programs), 아동의 실행 조직(Children's Implement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보호 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Child Care Management System Taskforce)를 두고 있다.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FaHCSIA)는 전달체계로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와 그 파트너 기구들로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기구인 Centerlink,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를 관리한다. 전국 550개 가족지원사무소는 조세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보육급여, 의료보험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 지급, 지원자격 상담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Centerlink와는 협력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Centerlink는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소속 법적 기구로 1997년 연방 서비스 전달 기구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가족지원사무소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자(Getting the System Fair)'라는 구호 하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육시설에 결석하였을 경우 보육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사무소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므로 보육료 지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환급절차에 착수한다.

3.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보육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주정부 보육지원(Child Care Support) 사업은 ①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집행, ②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③ 근로자의 보육 지원, ④ 보육시설의 수급실태 및 보육수요 파악, ⑤ 직업훈련생들의 보육 지원, 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지원, ⑦ 보육시설 접근 핫라인 운영, ⑧ 보육시설 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학교, 예비학교(유치원) 및 일부 일시보육센터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제정 및 집행업무도 담당한다. 보육관련 주요 기능으로는 ①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등)에 대한 인가, ②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③ 연방 및 연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④ 연방정부의 보육지원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⑤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⑥ 보육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이다.

보육시설의 인가³⁾ 및 지도·감독은 주정부에서 담당하는데, 종일제 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모든 주정부가 규제(기준 제공 및 이행여부 감시)를 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은 일부 주에서만 규제하고 있다.

3) 호주에서는 인가를 3년에 한번씩 갱신함.

4. 주요 사업 및 예산

호주 연방정부의 주요 보육관련 사업은 보육급여, 보육조세환급(Child Care Tax Rebate: CCTR), 취업 및 훈련 보육보조금(Jobs,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Fee Assistance), 그리고 보육 서비스 질 관리, 장애아동 통합서비스,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Support Program)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 호주연방정부의 보육관련 예산 추정

단위: 백만 AUD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 급여	142.7	136.5	132.8	135.7
보육조세환급	514.6	558.5	610.7	662.9
취업 및 훈련 보육보조금	16.4	0.2	1.1	0.1
소외 지역 및 복지 보육 지원	8.6	10.2	12.0	13.0
장애아 통합 지원 보조	14.9	15.3	15.8	16.3
질 인증 시스템	2.5	2.3	2.3	2.3
조기교육 및 규제: 신규	0.6	0.4	-	-
계	700.3	723.4	774.7	830.3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Budget 2007-2008 at a Glance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보육부분 예산은 2007~2008년에 7억 달러 규모이다. 조세 환급 예산이 가장 많고 다음이 보육급여로 대부분이 보육비용 지원금이다. 이외에 어머니의 직업 교육 및 훈련시 보육비용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관리 소외 지역 및 벽지 보육지원의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호주 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0.45%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 비용 및 유아휴직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참고로 2006~2007년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 예산은 483억달러였으며, 2007~2008년 예산은 506억달러이다. 전체 호주 연방 정부 예산은 2006~2007년 2,370억달러로서 전체 예산 대비 관련 부처의 예산은 약 20%이다.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보육서비스

호 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Approved care)과 등록보육(Registered care) 서비스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등록보육은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보육서비스 유형은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가보육 유형

1)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종일제 보육은 종일제보육센터에서 제공된다. 종일제보육센터는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를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1년에 48주 이상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관이다. 종일제 또는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주체는 다양한데, 크게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시설로 구분된다. 시설의 2/3 정도가 민간부분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법인에 의하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보육시설이 전체의 25%가 된다.

2)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가정보육은 만 0~12세의 소수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보육자가 통상 자기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서 부모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양한 시간의 보육이 가능하며,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조정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보육모의 수는 적게는 1명에서 1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조정기구는 가정보육모의 채용, 훈련, 지원 및 활동 평가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자들이 적절한 보육모를 정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방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가정보육은 종일보육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어 교대제 근무자나 계절적 취업자 등에 의하여 유용하게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0~5세 아동을 보육하지만 특별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5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주로 만 5~12세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교시간 전, 방과후, 학교가 쉬는 기간 중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학교나 지역사회 회관에서 실시하고 게임, 스포츠, 독서, 음악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들 기관에는 국가기준에 따라 아동 30명당 1명의 교사 자격소지자를 두어야 한다.

4) 일시보육(Occasional Care)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일시보육을 제공할뿐 아니라 취학전의 아동이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곳으로,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육할 것을 권장한다. 일시보육센터는 대부분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설치·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로 전업주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5) 가정내 보육(In-Home Care)

가정내 보육은 0~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형태이다. 이 역시 가정내 보육 조정기구의 관리를 받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응급처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가정내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은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이 2명의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나. 등록보육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유아원, 일시보육센터, 방과후보육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다.

등록보육 이용부모에게는 인가보육의 최소한의 보육급여 수준으로 비용이 지원된다. 그러나 보육비 조세 환급 대상은 아니다.

다. 기타

1) 소외지역 및 원주민에 제공되는 서비스

소외지역이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보육과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로, 종일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이동보육, 농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농촌 및 벽지에 살고 있는 보호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은 부모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둘째,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로, 원주민 아동의 문화적·사회적·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동 서비스(Mobile Children's Services)로, 소외지역을 이동하며 아동을 보육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서비스이다. 일시보육, 휴일보육, 놀이집단, 이야기 들려주기, 게임,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이나 비디오를 대여하기도 하고, 건강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며, 주변의 아동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원주민에게 놀이집단과 같은 조기 학습과 영양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유치원(Pre-schools)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 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종일제 또는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또는 예비초등학교(pre-primary)로 불린다. 예비초등학교는 주로 3~4세의 아동, 특히 4세 아동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3) 직장보육

1990년대 중반부터 ILO협약 제156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권장되었다. 1999년 현재 65개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 자녀 보육을 종일 제보육센터 또는 가정보육에 위탁하기도 한다.

라. 보육시설 및 서비스 규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5>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수: 2004

단위: 개소

구분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체
사립종일제 보육시설	1,051	435	686	72	213	19	13	26	2,515
공립종일제 보육시설	494	299	179	105	94	43	28	55	1,297
가정 보육센터	102	70	87	15	21	11	6	6	318
가정내 보육센터	17	14	22	2	8	3	0	2	68
방과후보육 ¹⁾	561	656	411	229	112	62	38	68	2,137
방학 보육	411	233	343	160	99	45	25	24	1,340
일시 보육	43	22	15	1	12	4	1	3	101
다기능 보육시설	1	2	3	2	2	0	3	0	13
MACS	10	5	2	5	5	1	2	0	30
이동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10	5	5	2	2	0	3	0	27
원주민 보육 시설	7	5	22	4	11	0	6	0	55
계	2,707	1,746	1,775	597	579	188	125	184	7,901

주 : 1) 학교 시작 전 보육도 포함되어있음.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표6〉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2004

단위: 명

구분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 -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 -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체
사립종일제 보육시설	77,839	41,536	76,850	9,076	19,274	1,529	917	2,242	229,263
공립종일제 보육시설	38,543	25,244	14,884	111,479	8,268	4,911	1,679	4,396	109,404
가정 보육센터	28,933	20,624	17,886	7,983	5,838	4,582	884	1,678	88,408
가정내 보육센터	820	403	943	118	350	417	0	54	3,105
방과후보육 ¹⁾	37,317	39,177	33,026	16,614	5,983	3,456	1,798	5,142	142,513
방학 보육	24,183	14,915	22,008	11,653	6,091	2,738	1,344	1,611	84,543
일시 보육	2,733	2,074	1,121	86	919	220	5	201	7,359
다기능 보육시설	83	268	209	227	155	0	123	0	1,065
MACS	556	241	97	163	218	65	114	0	1,454
이동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859	612	695	121	136	0	388	0	2,811
원주민 보육 시설	197	56	517	176	124	0	141	0	1,211
계	212,063	145,150	168,236	57,696	47,356	17,918	7,393	15,324	571,136

주 : 1) 복수응답임.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종일제보육시설은 공립시설이 1,297개소, 사립시설이 2,515개소이다. 가정보육과 가정내 보육은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연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04년 조사 결과 가정보육 센터는 318개소이고 가정내 보육 센터는 2004년 68개소, 2005년 8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보육 시설은 2,137개소이다. 이외에 원주민 보육시설, 아동 및 장난감 도서관 등

특수한 기관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6〉은 서비스 유형별 시설 이용 아동수를 나타내며, 〈표 7〉은 1999년 이후 보육서비스 센서스 결과 시설유형별 시설과 아동수 증감 및 시설별 아동수를 나타낸다. 2004년 현재 종일제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약 33만 8천 명 정도 된다.

〈표 7〉 호주 보육시설 변화 추이: 1999~2004

단위: 개소, 명, %

시설 유형	1999년	2002년	2004년
사립종일제보육시설			
시설 수	2,617	2,178	2,515
아동 수	193,785	200,815	229,263
시설당 평균 아동 수	74.0	92.2	91.2
공립종일제보육시설			
시설 수	1,016	1,253	1,297
아동 수	76,450	107,317	109,404
시설당 평균 아동 수	75.2	85.6	84.4
가정보육 센터			
시설 수	313	318	318
아동 수	81,418	93,450	88,408
시설당 평균 아동 수	260	294	278
방과후보육			
시설 수	1,828	2,098	2,137
아동 수	99,902	131,433	142,513
시설당 평균 아동 수	54.7	62.6	66.7
방학 보육			
시설 수	1,080	1,275	1,340
아동 수	57,521	82,339	84,543
시설당 평균 아동 수	53.3	64.6	63.1

주 : 2002년에 공립종일제보육시설 수의 증가는 분류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임.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보육시설 수가 연차별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한 가지 특징은 시설 별 평균 아동수가 1999년에 비해 그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기준 91.2명으로 공립보육시설보다 약간 규모가 크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약간 큰 규모이다.

가정보육의 경우에는 한 조정가구가 포괄하는 가정보육의 수가 많아서 가정보육센터당 아동수는 2004년에 278명을 기록하였다.

마. 서비스 공급 주체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급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호주의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는 서비스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방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립보육시설은 종일보육시설 11.1%, 일시보육시설 22.9%, 방과후보육 시설 21.0%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시설 중 15.5%가 공립시설이고 이외는 사립시설로 민간의 비중이 매우 크다.

종일제보육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립보육시설이 66.0%를 차지하고 공립보육시설이 34.0%이다.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립보육시설이 67.7%를 차지하고 공립보육시설이 32.3%이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수로 보면 Tas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3개 지역은 공립보육시설이 70%에 가까운 반면에 그 이외 지역은 사립보육시설이 더 많고, 특히 Queensland는 공립보육시설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수도 이와 유사하여 공립시설의 비중이 최대 Tasmania는 76.3%인데 비하여 Queensland는 16.2%에 불과하다.

〈표 8〉 종일제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설립주체 비율: 2004

단위: %(개소, 천명)

구분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is -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 -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체
시설									
사립	68.0	59.3	79.3	40.7	69.4	30.6	31.7	32.1	66.0
공립	32.0	40.7	20.7	59.3	30.6	69.4	68.3	67.9	3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45)	(734)	(865)	(177)	(307)	(62)	(41)	(81)	(3,812)
아동									
사립	66.9	62.2	83.8	44.2	70.0	23.7	35.3	33.8	67.7
공립	33.1	37.8	16.2	55.8	30.0	76.3	64.7	66.2	3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6.4)	(66.8)	(91.7)	(20.6)	(27.5)	(6.4)	(2.6)	(6.6)	(338.7)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호주 사립보육시설의 특성 중 하나는 이들 보육시설 중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한 자본이 체인 형태로 설치한 시설이 2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⁴⁾ 이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단시간에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 정책의 결과이다. 호주는 1990년에 보육 수요에 비하여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였으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초기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동부 해변가 지역에는 공립보육시설은 물론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가 짧은 시간 내에 보육서비스

4) 초기에 ABC Learning Centres, Hutchison's Child Care Service, Childs Family Kindergatens, Kids Campus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후에 Kids Campus는 ABC Learning Centres에 합병되었음. 현재 ABC Learning Center는 905개의 보육시설은 운영하는 큰 업체가 되었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그 수단
의 하나로 종일제보육시설에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종일제보육시설의 25%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에 의하여 운영
되게 되었다. 한편 유치원은 대체로 학교 부설이다. 호주의 학교 70%
정도는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설립 주체이고 20%는 가톨릭 등 종교
단체이며 10%가 사립이다(OECD, 2006).

2. 보육서비스 이용

가. 이용률

호주의 보육통계는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동을 포함하여 11세까지
를 대상으로 한다.

2005년도 보육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에 의하면 0~4세아

〈표 9〉 4세미만 아동 보육 이용률: 1996~2005

단위: %

구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보육이용률	53.8	58.9	55.8	59.9
공식보육만	13.7	15.8	19.1	21.5
비공식보육만	30.1	31.7	24.1	24.7
두가지 이용	10.0	11.4	12.6	13.7
미이용	46.2	41.1	42.2	40.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만을 대상으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률이 59.9%이다. 1996년 이후 개인에 의한 비공식보육의 이용은 감소하고 시설 중심의 공식보육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공식보육은 1996년에 13.7%이었던 것이 2005년에 21.5%로 증가한 반면에 비공식보육은 1996년에 30.1%였던 이용률이 2005년 24.7%로 감소하였다. 공식보육과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아동도 2005년 13.7%에 이른다.

0~5세아를 연령별로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이용률을 보면 <표 10>와 같고 이를 공식보육과 비공식보육으로 나누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 [그림 3]와 같다.

먼저 연령별 인가 보육비율을 보면, 종일제보육센터의 이용률은 만 3세가 38%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게 높고 그 이후에 감소한다. 가정보육은 만 2세아, 3세아가 11% 수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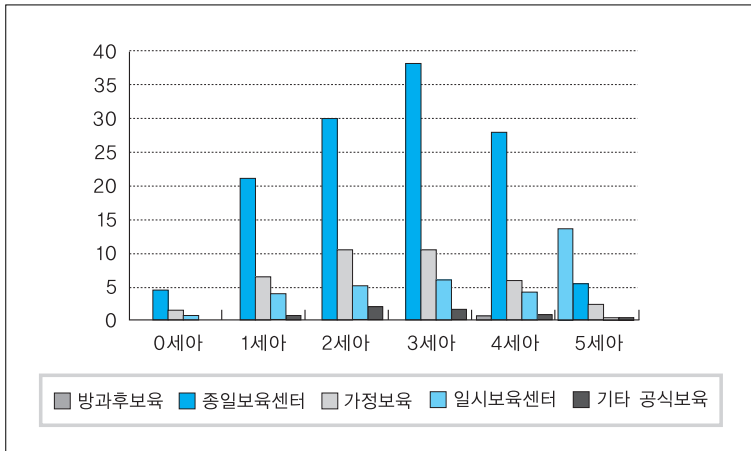
비공식 부분 보육은 조부모에 의한 보육이 만 1세아, 만 2세아가 각각 33.2%, 30.7%로 높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한다. 그러나 만 5세아도 조부모에 의한 보육이 17% 수준을 유지한다. 형제자매에 의한 보육도 아동 연령이 만 4, 5세가 되면서 증가한다.

〈표 10〉 연령별 보육 이용률(중복응답):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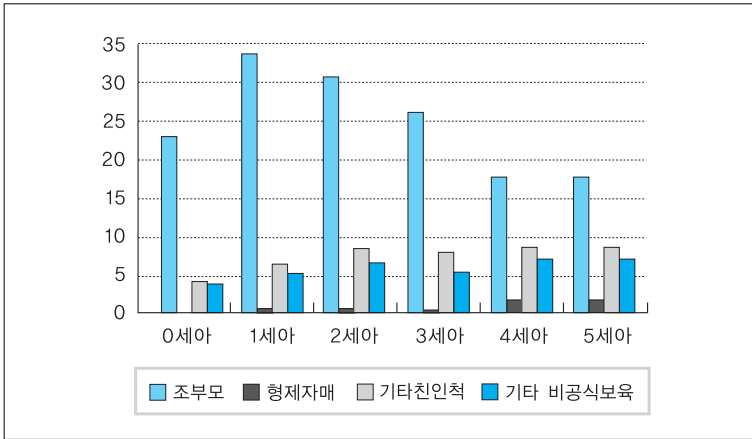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공식보육						
방과후보육	-	-	-	-	0,8	13,6
종일제	4,5	21,0	29,9	37,6	27,7	6,0
가정보육	1,6	7,1	10,8	10,7	6,0	2,2
일시보육센터	0,8	3,2	5,2	5,8	3,8	0,2
기타	0,1	0,8	1,8	1,6	1,2	0,4
계	6,9	31,0	46,3	53,4	37,8	21,8
비공식보육						
조부모	22,9	33,2	30,7	26,2	17,8	17,8
형제자매	-	0,4	0,4	0,2	1,5	1,5
기타친인척	4,2	6,7	7,8	7,7	8,3	8,3
기타	4,1	5,2	6,4	5,6	7,3	7,3
계	29,4	42,8	42,7	37,9	32,4	32,4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그림 2] 연령별 인가보육 이용률(중복응답): 2005



[그림 3] 연령별 등록보육 이용률(중복응답): 2005

〈표 11〉 0~5세 아동 유치원 이용률

단위: %(개소, 천명)

구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0~3세	7.0	6.0	4.8	4.9
4세	46.1	50.9	57.6	62.0
5세이상	4.7	17.9	17.0	18.9

주 : 호주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2005년부터 공식보육에 유치원도 포함함.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한편 유치원 이용은 2005년도 보육실태조사⁵⁾가 실시된 1주일 동안 유치원을 이용한 만 4세 아동 비율은 62.0%이었다(표 11 참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 취학전 1년인 만 4세아 유치원 교육은 대개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모는 학용품비 등 일부 비용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5) 2005년도 보육실태조사 200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유치원 관련 자료도 제시하였음.

나. 이용시간

인가보육과 등록보육 모두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하이다. 12세 미만 아동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공 받는 보육서비스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일보육센터의 경우 평균 18시간, 가정보육센터 17시간 정도이고 일시보육은 5.8시간이다. 등록보육의 경우도 친인척 보육이 20.5시간으로 다소 길고 조부모 보육은 12.4시간이다(표 12 참조).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호주 보육료 지원정책이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한다. 두번째로는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들 취업조차도 시간제나 다수라는 특성이 있다.

〈표 12〉 0~12세 아동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분포: 2005

단위: %

구분	5시간 미만	5~9	10~19	20~29	30~39	40시간 이상	계	평균
인가보육								
방과후보육	46.5	32.2	19.4	1.7	0.2	-	100.0	6.0
종일보육센터	3.3	23.2	36.5	19.9	8.5	87	100.0	18.4
가정보육센터	8.2	26.4	30.8	18.7	8.1	78	100.0	16.9
일시보육센터	52.2	25.5	22.3	-	-	-	100.0	5.8
기타	47.6	27.6	16.5	-	3.1	53	100.0	10.1
계	21.7	25.4	29.3	12.7	5.5	54	100.0	13.6
등록보육								
조부모	36.9	24.8	19.4	9.6	2.8	64	100.0	12.4
친인척	31.6	18.2	16.5	10.2	5.8	185	100.0	20.5
기타	49.1	22.2	15.1	7.9	3.4	23	100.0	9.7
계	34.9	22.9	18.5	9.6	4.1	101	100.0	15.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참고로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 시간 역시 짧다. 조사대상 기간인 1주일 동안 유치원 이용 아동 25만 7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은 10~14시간이 40.7%로 가장 많고, 15시간 이상이 27.4%, 5시간미만 10.6%, 5~9시간 21.3% 등이다.

다.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공식보육 이용 아동의 54.0%와 비공식 보육 이용의 46.7%가 일과 관련하여 대리보호가 목적이다.

〈표 13〉 0~4세미만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 2005

단위: %(명)

구분	일 관련	개인사정	아동발달	기타	계(수)
공식보육					
방과후보육	100.0	-	-	-	100.0 (2,100)
종일보육센터	56.7	14.8	24.9	3.6	100.0 (303,000)
가정보육센터	62.7	17.2	17.9	2.2	100.0 (90,500)
일시보육센터	29.5	34.9	31.8	3.7	100.0 (47,200)
기타	26.1	38.6	34.3	1.1	100.0 (13,700)
계	54.0	18.0	24.6	3.3	100.0 (439,900)
비공식보육					
조부모	49.5	39.9	3.9	6.7	100.0 (349,800)
친인척	31.6	37.3	2.1	28.6	100.0 (88,100)
기타	53.7	38.5	4.1	5.7	100.0 (68,600)
계	46.7	39.6	3.9	10.2	100.0 (479,20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이유는 차이가 난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인가 보육 중 일시보육이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일과 관련된 이용 비율이 낮다(표 13 참조).

라. 입소 우선순위

호주 보육당국은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제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기타 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3. 이용 비용

영유아 보육료나 교육비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 편차가 크다(표 14 참조).

〈표 14〉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단위: AUD, %(개소)

구분	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170 미만	4	6
\$170~\$179	7	6
\$180~\$189	14	12
\$190~\$199	20	13
\$200~\$209	17	14
\$210~\$219	11	12
\$220~\$229	8	11
\$230~\$239	5	6
\$240~\$249	3	6
\$250 이상	11	12
계(수)	100 (2,515)	100 (1,217)
평균	211	208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2004년 보육서비스 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s) 결과 종일제보육시설 주당 평균 보육료는 공립보육시설 211달러, 사립보육시설 208달러로 조사되어서, 공립과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어서, 170달러 미만에서부터 260달러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아동연령별로 규정된 직원 1인당 아동수는 차이가 있지만⁶⁾ 아동연령별 보육료 차이는 거의 없다(표 15 참조).

6) 직원 1인당 아동수는 0~1세아는 4~5명, 2세아는 10~12명, 3~4세아 10~15명임.

〈표 15〉 연령별 종일제보육시설 주당 보육료: 2004

단위: AUD

구분	1세	2세	3세
공립보육시설	215	212	208
사립보육시설	218	210	205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표 16〉 종일제보육시설 주당 보육료: 1995~2004

단위: AUD, %

구분	'95년	'97년	'99년	'02년	'04년	'95~'04년 연평균 증가율	'89~'90년 대비 '05~'06년 소비자 물가지수
공립보육시설	163	162	171	188	211	5.3	154.3
사립보육시설	142	152	161	184	208	7.3	
가정보육/50시간	122	130	139	163	185	7.0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각 연도),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이러한 평균 보육료는 1995년 이후 연평균 5.3%~7.3%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 보육료의 연평균 증가 비율이 7% 이상으로 높다. 호주의 1989~1990년 회계연도 대비 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54.3으로 지난 15년간 연 평균 약 3.6%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컸다(표 16 참조).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육료의 높은 상승 이유는 대부분 대규모 영리 자본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4. 보육인력

가. 자격 기준

호주는 보육인력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업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호주는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국가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도 대학에 따라 보육대상연령 기준을 아동연령 0~8세, 3~8세, 0~15세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습시간과 실습처 선정, 캠퍼스 위주의 교육과 원거리 교육 등 교육전달의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캠퍼스내 강의와 원거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제에서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4년제의 'honours'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기술교육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에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는데, 전문대학에서 1년 과정을 끝내면 Certificate를 받고, 2년의 과정을 끝내면 준학사에 해당되는 Diploma를 받게 된다. 전문대학의 보육과정은 가정보육, 시설보육, 방과후보육 및 연습생(traineeship)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습생 1년 과정인 경우 1,045시간의 현장실습과 390시간의 학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보육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주 국립훈련원(The National Training Board)에

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경력 인증 척도를 개발하여 보육 직업자
격증(Australian Vocational Certificates)을 수여하였다. 경력에 따라서
1~6단계까지는 초급에서 2급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그 이상 단계
는 1급에 해당하도록 하여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인
정한다.

나. 인력 규모 및 소지 자격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4년 조사 결과 약 8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종일제보육시설에 46,47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방
과후 및 방학 보육에 각각 1만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가정보육
및 가정내 보육은 가정보육사의 수가 12,000명에 이르며 센터 직원
의 수도 2,500명에 달한다. 이외에 일시보육종사자도 1,000여명 수
준이다(표 17 참조).

종일제보육시설의 경우 61%가 사립보육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39%가 공립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보육시설수나 아동수에 비하
여 교사의 비율은 공립보육시설이 다소 높다(표 18 참조).

보육시설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자격증 소지자가 주를 이루지만 자
격증 미소지자의 채용도 가능하다. 보육제공사 대비 아동수를 명시
한 규정에서도 자격자보다는 직원(staff)이라는 용어로 아동수를 정
하고 있다.

〈표 17〉 보육 인력 수: 2004

단위: 명

구분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 -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 -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체
사립종일제 보육	9,046	5,999	9,140	1,127	2,279	193	165	398	28,347
공립종일제 보육	6,464	4,251	2,514	1,726	1,210	717	370	872	18,124
가정 보육 - 직원	631	337	397	145	114	75	27	44	1,770
가정 보육 - 보육사	3,793	2,872	2,639	937	710	461	154	327	11,893
가정내 보육 - 직원	39	38	55	4	20	23	0	5	184
가정내 보육 - 보육사	221	106	263	34	80	94	0	13	811
방과후보육 ¹⁾	3,103	2,955	2,647	1,209	543	259	161	654	11,531
방학 보육	3,155	2,094	2,788	1,397	754	295	183	332	10,998
일시 보육	362	215	161	12	100	44	10	22	926
다기능 보육	12	35	43	33	27	0	29	0	179
MACS	124	54	30	44	62	15	22	0	351
이동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44	65	12	20	21	0	12	0	174
원주민 보육	28	9	55	21	22	0	28	0	163
전체 서비스	27,022	19,030	20,744	6,709	5,942	2,176	1,161	2,667	85,451

주 : 1) 방과전 보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표 18〉 종일제보육시설 설립주체별 보육인력 비율: 2004

단위: %(명)

구분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 -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 -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전체
사립	58.3	58.5	78.4	39.5	65.3	21.2	30.8	31.3	61.0
공립	41.7	41.5	21.6	60.5	34.7	78.8	69.2	68.7	39.0
계 (수)	100.0 (15,510)	100.0 (10,250)	100.0 (11,654)	100.0 (2,853)	100.0 (3,489)	100.0 (910)	100.0 (535)	100.0 (1,270)	100.0 (46,471)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표 19〉는 보육서비스 유형별 보육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3년의 기본 경력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인력은 사립보육센터가 12%, 공립보육센터가 13%이고 방과후보육이 22% 수준이다. 종일제보육시설의 경우 무자격 경력 3년 이상인 자까지 포함하면 자격이 없는 직원의 비율은 사립 종일보육센터 22%이고, 공립 종일보육센터는 29%에 이른다. 종일제 보육에서 가장 많은 자격이 2년 과정의 보육인력 교육을 마친 경우이고, 다음이 경력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비율이다.

〈표 19〉 보육인력 자격: 2004

단위: %(명)

구분	사립 종일 보육센터	공립 종일 보육센터	가정보육 센터	가정내 보육 센터	방과후보육
유아교사	7	9	10	8	10
초등교사	2	2	5	3	5
간호	2	3	6	6	2
보육1년	19	13	5	5	8
보육2년	20	25	28	18	9
보육3년	10	8	16	12	4
기타	5	7	22	35	8
자격만 취득	18	11	5	6	25
무자격 경력 3년 이상	10	16	14	13	13
기타	12	13	7	9	22
계 (수)	100.0 (29,300)	100.0 (18,793)	100.0 (1,803)	100.0 (185)	100.0 (11,822)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다. 근로형태

호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8시간이지만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보육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종일제 보육센터의 경우 42%가 종일제로 고용되어 있고 30%가 시간제 고용이며, 25%는 임시로 고용되어 있다. 사립과 공립시설의 차이는 거의 없다. 방과후 경우는 임시고용이 64%를 차지한다(표 20 참조). 종사자들은 다양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표 20〉 보육인력 고용 형태: 2004

단위: %(명)

구분	사립 종일 보육센터	공립 종일 보육센터	가정보육 센터	가정내 보육 센터	방과후보육
종일제 고용	42	42	35	37	7
시간제 고용	30	30	58	58	28
임시 고용	25	24	5	4	64
무급	3	4	2	1	2
계 (수)	100.0 (29,300)	100.0 (18,793)	100.0 (1,803)	100.0 (185)	100.0 (11,822)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호주의 육아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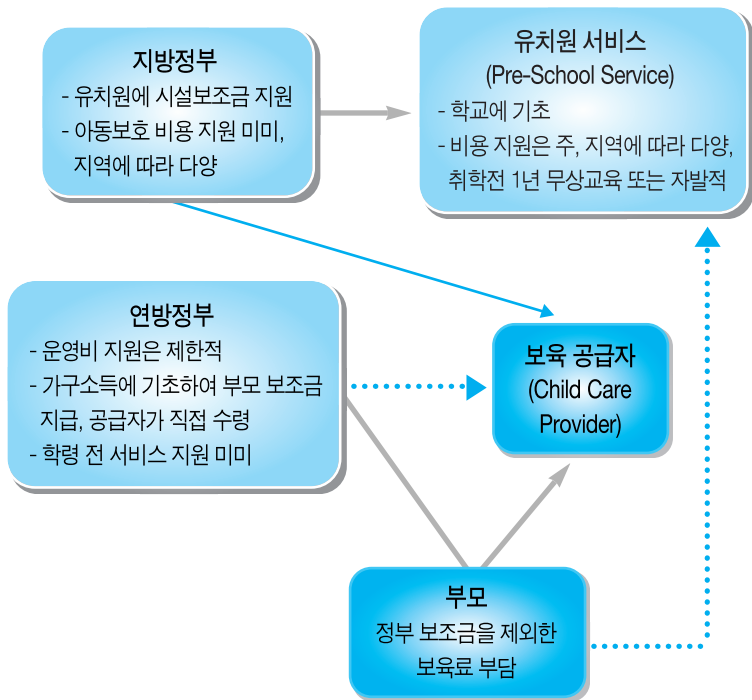
1. 육아재정 지원 개요

호주의 보육료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앙은 물론 대부분의 연방정부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의 보편적 보육과 유아 교육 재정 지원체계는 [그림 4]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된 재원과 지원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은 주로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주로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자료 :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Volume 4, 재구성

[그림 4] 호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체계도

있다. 이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약간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 보육·교육 비용 지원 및 부모 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호주 보육에 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극히 일부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종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보육시설, 연방정부가 공급하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구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지역사회 종일보육시설과 방과후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며, 장애아동 가정보육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 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보육지원보조금, 탄력적 보육지원 자금,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등은 시설별로 지원된다. 한편으로 New Southern Wales, Northern Territories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OECD, 2002).

보호자 보육료에 대한 지원 방법은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이다. 2000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보육급여 제도로 일원화되었는데, 이러한 보육급여 제도는 그대로 둔 채 2004년 6월부터 다시 보육조세환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취학전 1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당 40~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주는 2005~2006 회계연도의 경우 유치원 아동 1인당 연 5,700달러 정도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호 주는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 CCA)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 CCCR)를 통합하여 보육급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보육료 보조제도는 중산층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이며, 보육료 환불 제도는 모든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제도이었다. 보육료 보조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로 한정하였고, 보육료 환불제도는 공식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육 이용자에게도 제공되어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메디케어(Medicare)에 아동의 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었다.

2000년에 정비된 보육급여는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제도로, 당시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시설중심의 인가보육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였다.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는 5,000달러 단위로 보육급여 비율을 정하였으나 현재는 1,000달러 단위로 보육급여 비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수준도 확대되어서, 과거에는 최대지원을 받는다 해도 무상보육은 없었고 고소득층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는 무상보육이고, 소득상한 기준도 없다. 2007년 현재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 요건

보육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① 호주 국민이어야 하며, ②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③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은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된다. 종일보육, 가정보육,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방과후보육, 일시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FAO)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의 경우가 대상이다.

〈표 21〉 보육급여의 요건: 2007

구분	요 건
24시간의 CCB	무조건 1주일에 24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음. 부모의 소득, 아동의 연령, 보육 시설 이용시간 등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급여임.
50시간의 CCB	보호자가 일주일에 15시간, 2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고용자, 고용주, 창업, 교육 및 훈련, 구직, 근로 기술 증진을 위한 자발적 근로 등 근로 관련 조사 면제 - 아동 Carer Allowance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 -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다른 한부모는 근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Child Care, 재구성.

2007년 현재 부모는 기본으로 주당 24시간까지를 지원받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 책임이 있고 소득 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였다.⁷⁾

7)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었음.

나. 지원 수준

2007년 현재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보육시간,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등에 따라 정해진다.

〈표 22〉 소득 기준 및 아동수 별 보육급여 지원 비율 요약: 2007

단위: AUD, %

구분	아동수		
	1명	2명	3명
\$35,478 미만	100.00	104.50	108.73
\$36,000	99.40	104.05	108.43
\$37,000	98.26	103.20	107.86
\$38,000	97.12	102.34	107.29
\$40,000	94.84	100.63	106.15
\$50,000	83.43	92.07	100.44
\$60,000	72.01	83.51	94.74
\$70,000	60.60	74.95	89.03
\$80,000	49.19	66.39	83.32
\$90,000	37.77	53.68	72.09
\$100,000	26.36	39.42	58.77
\$110,000	16.74	25.15	45.46
\$120,000	16.74	16.74	32.14
\$130,000	16.74	16.74	18.83
\$131,570 이상	16.74	16.74	16.74

주 : 1) 실제로는 1,000달러 단위로 구성됨.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Child Care, 재구성.

2007~200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한 자녀 기준으로 13만 1,570달러 이상이면 최소비율인 16.74%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5,478달러 이하이면 100%

의 최고 비율이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은 1,000달러를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비율(partial rate)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자녀 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 최고액은 시설보육의 최소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셈이다.

〈표 23〉 인가보육시 최고 보육급여 비율 지원 시 금액(최고액)

단위: AUD, %

아동 수	일주일 당	시간당
1	168.50	3.37
2	352.17	3.52
3	549.63	3.66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표 24〉 최소 지원 금액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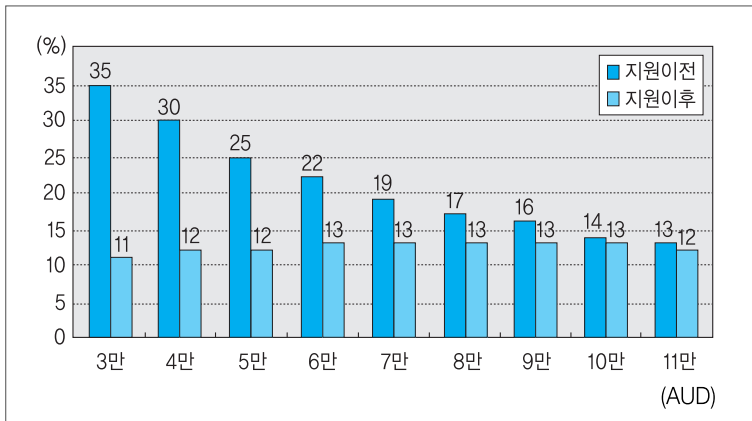
구분	비율
시간당 최소 비율	0.56
50시간 보육 최소 비율	28.21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보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각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각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세청은 가구의 실제소득을 확인, 가족지원사무소에 통보한다. 동 자료에 근거하여 가족지원사무소는 보육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심사후 과다 지출이 이루어졌음이 발견되면 환급절차에 착수한다.

다. 부모부담 완화 효과

보육급여 지원 결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004~2005년의 경우 아이 1명을 둔 가정에서 자녀를 종일제로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료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1~13% 수준이 된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저소득계층의 부담 비율이 35%에 이르지만 보육급여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그림 5 참조).⁸⁾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FaCS Annual Report 2004~2005.

[그림 5] 보육급여 지급 전후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비 비율

그러나 호주 보육시설 이용시간 2005년 당시 기준인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취업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제 이용시간은 짧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

8) 2004~2005년 당시 보육급여 수준을 보면 한 자녀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 연소득 수준이 33,000달러 정도인 저소득 가정은 보육센터 보육료의 67%, 가정보육은 보육비의 76%를 지원 받고, 가구소득이 45,000달러 정도인 중류 가정은 각각 56%, 63%를 지원 받았음.

므로 비용은 모두 부모의 몫이 된다. 2005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주일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20시간 미만이고, 따라서 비용도 아동 평균 49달러 정도를 지불한다. 45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가정은 주당 약 150달러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표 25, 표 26 참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가정은 5% 내외로 조사되었고, 약 20% 정도는 주당 1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7 참조).

〈표 25〉 종일제보육시설, 가정보육 비용 분포

단위: AUD, 시간

	비용		시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종일제보육시설	70.3	50	18.4	16
가정보육	42.4	25	16.9	14
전체	49.4	31	13.6	1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표 26〉 0~12세 아동 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별 부모 부담

단위: AUD

구분	주당 평균	중위
5시간미만	13.0	10
5~9시간	30.5	28
10~19시간	49.2	46
20~29시간	84.1	81
30~34시간	101.6	87
35~39시간	122.1	85
40~44시간	137.6	130
45시간이상	148.9	150
전체	49.4	31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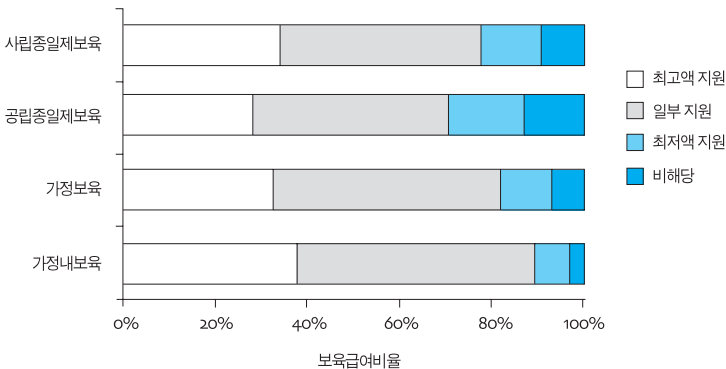
〈표 27〉 영유아 이용서비스별 주당 비용 부담 분포

단위: AUD, %

구분	미지불	1~9	10~19	20~39	40~59	60~99	100~	계
공식보육 또는 유치원	5.8	10.5	13.5	20.7	15.0	15.1	19.0	100.0
공식보육	6.3	10.3	12.8	21.0	15.8	14.8	18.6	100.0
공식보육 / 유치원과 가정내 보육	4.8	10.0	13.2	18.2	13.7	16.9	22.6	100.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2004년에는 585,600명의 아동이 보육급여를 받았다. 97,100명의 아동이 공식 보육을 받으면서 보육급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보육급여자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0~40% 정도가 최고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가정내 보육 이용자의 보육급여 수혜 비율이 높다.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그림 6] 호주 보육료 지원 수준

보육급여 미신청자 중 25%는 고소득자로 추정되며, 21%는 이용하
는 시설이나 보육제공자가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육급여 등 정부 지원으로 영유아 부모는 전체 보육비용의
31%를, 방과후 아동은 35%를 부담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정부가 지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2006)는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여 영유
아에 투자되는 비용은 2002년 기준 GDP 대비 0.45%로 추정하였다.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인가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는 세 가지 보육급여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당 보육급여 전체를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보육료에
서 보육급여를 제외한 비용을 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보육료를 모두 부담한 후에 회계연도 말 이
후에 정부로부터 해당 보육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최저 수준의 아동보육급여만을 보육시설에 지급하
게 하고 가정에서는 그만큼 감소된 보육료를 낸 후, 회계연도 말 이후
에 나머지 보육급여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법이다.

한편 등록자 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이 보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전에 가족
지원사무소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30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
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

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 질병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30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3. 보육조세환급 (Child Care Tax Rebate, CCTR)

보육조세환급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개념적으로는 2000년 7월 이전에 있었던 보육료 환불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의의는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total fee charged)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업모와 인가보육에 한정한다는 점에서도 2000년 이전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가. 지원 조건

보육조세환급의 수혜 조건은 보육서비스 유형과 부모의 취업여부이다.

보육조세환급 수혜 대상은 시설 중심의 인가보육에만 해당되고 조부모, 친인척 등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은 제외된다. 인가보육은 종일제 보육, 가정보육, 가정내 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이다.

또한 부모가 모두 취업, 훈련 등 보육급여의 근로 관련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부모가 보육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나. 지원 수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에 소요된 부모 부담 비용의 30%로, 최고 4,000달러까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2006년 7월부터 개선했었다. 이전에는 부모가 내는 세금의 범위 안에서 환급해 주었으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최고액까지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06~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부모가 내는 세금 액수에 관계없이 최고액까지 모두 현금으로 되돌려 주도록 변경되었다.

다. 전달체계

보육조세환급제도는 호주 세무당국에서 담당한다. 조세환급금은 부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4. 기타 추가 지원

가. 취업, 교육, 훈련 시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의 조건은 최고비용의 보육급여 대상자로 시설 중심의 인가보육 서비스 이용자이어야 한다.

지원기간을 보면 구직은 20주 동안 20일, 유급 및 무급 취업은 초기

26주, 학업 및 훈련은 12개월,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정부 자활 프로그램 참여 기간 등이다.

지원 수준은 부모에게 실제로 부과된 보육료와 보육급여가 허용한 비용과의 차액이다.

나. 조부모 보육급여

2005년 1월부터는 주 보호자가 조부모이고, 이 조부모가 노령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 보육급여율보다 높은 조부모 급여율(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자에 의한 보육 이용자도 주당 5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특별한 아동 보육급여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 단기적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보육료 부담 능력이 취약해진 가정 아동 등에는 특별한 아동 보육급여(Special Child Care Benefit)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일정 제한된 기간 동안 전액을 다 지원한다.

라.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새로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나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는 무료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1. 국가기준

호 주에는 연방 차원에서 보육에 관한 국가 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각 주와 지역 정부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사회복지장관위원회가 처음으로 종일제보육시설의 국가 기준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1995년에는 가정보육과 방과후보육의 국가 기준을 통과시켰으며, 1998년에는 가정내 보육센터의 국가기준도 만들었다.

가. 종일제 보육

1993년 6월에 열린 사회복지장관회의(Council of Social Welfare Ministers)에서는 종일제 보육 국가기준으로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적인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종일

제 보육의 국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이 인증 체계 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일제보육의 국가기준은 1990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99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1994년 보육시설평가인증 기준이 만들어졌다.

종일제 보육 국가 기준은 8개 주와 지역 중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asmania, Northern Territory가 모든 국가기준을 수용하고 있고, Queensland, New South Wales, South Australia가 1개의 조항을, Western Australia는 여러 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받아들였고, Victoria만 법적인 형태에서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대 아동비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가기준에 맞추고 있다.

각 연방정부의 기준에서 제시된 직원(staff) 대 아동비율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0~2세는 1:4 또는 1:5, 2~3세는 1:5, 1:6, 1:8 또는 1:10, 3~6세는 1:10, 1:12 또는 1:15이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취학전 영유아는 1:5 또는 1:4, 취학아동은 1:8 또는 1:7, 유치원은 평균 1:20~26이다(표 28 참조).

〈표 28〉 직원 대 아동 비율

구분	3세 미만	3세 이상
기준	1:5	1:11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5	1:11
Queensland	1:4 (0~2세)	1:12 (3~6세)
	1:5 (0~3세)	1:13 4~6세)
	1:6 (2~3세)	
	1:8 (2.5~3세)	
New South Wales	1:5 (0~2세)	1:10
	1:8 (2~3세)	
Northern Territory	1:5	1:11
South Australia	1:5 (0~2세)	1:10
	1:10 (2~3세)	
Tasmania	1:5	1:10
Victoria	1:5	1:15
Western Australia	1:4 (0~2세)	1:10
	1:5 (2~3세)	

주 : ()안은 연령대임.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6), A review of the approach to setting national standards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in Australian childcare services.

나. 가정 보육

1995년에는 사회복지장관위원회가 다시 가정보육과 방과후보육의 국가 기준을 통과시켰으며, 1998년에는 가정보육 조정기구의 기준도 만들었다. 가정보육 국가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시설,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 인력과 행정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2001년에는 이를 기초로 가정보육 평가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가정보육 국가기준은 8개의 지자체 중 6개 주가 제도화하였고, 그 중 Queensland, Tasmania, South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국가기준을 모두 받아들였고, Western Australia, New South Wales가 부분적으로 누락되었지만 국가기준에 근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Western Australia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가정보육 조정 체계와는 다른 자격 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현재 Victoria와 Northern Territory에서는 가정보육을 제도화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Western Australia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가정보육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 기준은 1995년에 장관회의에서 통과되어, 1997년부터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만 허가제와 방과후보육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 이외 연방정부 중 Western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Queensland 3개 지역에서 방과후보육을 제도화하였고, Tasmania는 2007년에 허가기준을 만들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규정이 없지만 현재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방과후보육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2004년 약 25%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라. 가정내 보육

가정내 보육은 1993년에 강력한 가족 및 지역사회 전략(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보육의 형태로 채택하였다. 이후 가정내 보육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벽지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연방정부의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면, Tasmania, South Australia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South Australia는 이러한 제도와는 달리 1985년부터 베이비시팅 대행업체에게 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전국에 82개의 가정내 보육센터(IHC)가 있어서⁹⁾ 4,325개 장소에서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가정보육 센터 운영 주체는 비영리로 정부 조직이 56.4%, 정부 대행업체가 15.4%이고, 영리업체가 28.2%이다.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교대근무 또는 기준보육 이외의 보육수요, ②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 ③ 아픈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경우, ④ 미취학 자녀가 3명 이상, ⑤ 모가 취업 중이면서 수유를 하는 경우 등 이다.

9) 2004년 센서스시에는 68개이었음.

2. 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체계

가. 행정조직

호주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Child Care Quality Assurance)를 구축한 목적은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받는 모든 아동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경험과 상호작용을 갖도록 하며, 동시에 인가된 모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행정 기구는 주 정부, 국가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인증결정검토위원회(Accreditation Decision Review Committee: ADRC)이다. 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육급여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연계하며, 국가인증위원회가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인증결정검토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소원이 있을 경우에 국가인증위원회의 인증 관련 결정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증결정검토위원회가 국가인증위원회의 인증 관련 결정을 반복할 수는 없다.

나. 인증제도의 실시 배경

호주는 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 및 인증제도(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민간이 아닌 국가가 인증하고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크다.

호주의 보육정책은 비교적 늦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90년대의 아동보육정책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된 1980년대 초 이래로 주요 관심은 유아기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런 관심은 1984년 미국전국유아교육협회(NAEYC)의 전국적이고 자발적인 인증제도에 영향을 받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의 보육 관련 단체와 인사들은 유사한 인증 체계의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인증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1990년 선거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수상이었던 R. J. Hawke경은 선거 정책 연설에서 “부모들은 정부 지원 보육 시설을 이용하든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육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증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관련 인사로 자문위원회 및 임시 전국인증심의위원회(INAC)가 구성되었고, 1993년에 임시 전국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제도 실시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호주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1993년 3월 ‘질적인 보육 시설에 대한 연방 정부 위임의 일부로서 질적 개선에 대한 전국적 인증체계는 1994년 1월 1일부로 종일제보육시설에서 시행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R. J. Hawke경의 선거정책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영리 사립보육시설간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 호주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사립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 더 많은데다가 사립시설은 일부 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로는 사립시설의 보육의 질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시설에 대하여서도 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증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다. 평가인증제도의 구체적 목적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발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및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긍정적 경험과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동과 가족이 가치있고 자아를 충족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부모와 함께 아동의 요구를 최선으로 충족시키며 전문가로서 발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가 보육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보육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인증제도에서는 좋은 보육시설을 첫째, 보육시설과 부모들의 합의에 의해 시설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고 명확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모든 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증진시

키며 셋째, 모든 활동구성과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수준상 적절성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라. 평가기준

2007년 말 현재 실시되는 3종의 평가기준은 각기 다른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종일제보육시설 평가기준은 아동과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아동의 경험과 학습, 보호와 안전, 건강·영양·복지,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의 7개 영역, 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보육 평가기준은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아동의 경험·학습발달, 건강·위생·영양·안전·복지,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관리와 행정의 6개 영역,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후보육 평가기준은 아동존중, 상호작용 및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놀이와 발달, 건강·영양·복지, 보호·안전, 운영관리의 8개 영역,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종류의 보육서비스 평가 기준은 부록에 수록하였다(부표 1, 2, 3 참조).

마. 인증 절차

호주의 보육시설 인증제도는 미국 NAEYC의 인증제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NAEYC의

인증절차와 유사하지만, 5단계로 구분하였고, 인증 기간도 처음에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1~3년으로 차등을 두는 등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과정에 참여한다는 등록단계이다. 보육센터는 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 등록을 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원칙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는다. 등록비용은 연회비 형태로 지불한다.

제2단계로, 보육시설은 NCAC에 등록 후 18개월 안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원장, 교사, 부모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자체평가(self-study)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세워 개선을 추진한다.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보고서를 NCAC에 제출한다. 등록 후에 18개월이 지나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한 실천계획(plan of action)을 NCA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NCAC에서 선정한 검토자(Reviewer)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찰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검

10) 예를 들어 검토자가 시설에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취업을 하고자 신청한 경력, 또는 자기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 여부 등임.

토자를 선정하여 검토자 및 평가를 신청한 보육시설에 통보한다. 검토자와 시설은 상호간에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¹⁰⁾의 문제가 없는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검토자를 교체하게 된다.

검토자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보육시설과 연락하여 방문평가일자를 결정한다. 방문평가는 6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평가기간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육아동의 수가 40인 이하인 시설은 1일 그 이상인 시설은 2일이 소요된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자의 검토와 시설장의 검토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검토자의 보고서는 제출 이전에 시설장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보육시설에서는 검토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방문 후 7일 안에 NCAC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가능하면 교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검토자는 NCAC에서 선발하는데 자격은 유아교육 분야 2년제 대학졸업자는 5년, 3년제 대졸자는 4년, 4년제 대졸자는 3년의 아동 관련 서비스 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체 경력 중 2년은 종일보육센터에서의 보육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유아에 대한 지식과 평가 척도에 대한 이해 및 객관적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자는 2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자격심사에 의해 선발되며, 선발후 5일간의 훈련을 받는데, 이 때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NCAC가 지원한다.

검토자는 최초 2년간 임명되고 경우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들은 1년간 5회 이상 검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토자는 방문평가 대상 시설의 시설장 및 조정자나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검토자는 연방사생활보호법(1988)과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시설에서도 검토자의 이름과 신분을 비밀로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검토자는 방문기간 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first name)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조정자(Moderator)의 건의이다. 조정자는 보육시설이 NCAC 인증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아닌지를 NCAC에 건의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자는 자체평가 보고서, 방문평가보고서, 시설장의 평가서, 실천계획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NCAC에 해당 평가시설에 대한 인증여부를 제안하며,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특히 자체평가 보고서의 점수와 검토자의 보고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조정자는 이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건의한다.

조정자는 유아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자라야 하고 최소한 8년 이상의 아동 관련 서비스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자체평가 과정, 방문평가, 평가척도, 검토 중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조정자로서의 윤리 및 행동 지침 등에 익숙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NCAC가 자체평가보고서, 관찰보고서, 조정자의 보고서 및 제안을 참고로 해당 시설의 인증여부 및 보육수준을 결정하고, 실천계획의 실시 기한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인증기간 동안 매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인증된 시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 등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호주는 불인증된 시설 등의 이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내 인증결정검토위원회라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인증결정검토위원회에서는 공정성, 객관성, 증거 기반, 자연 정의에 의거하여 결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시한다.

바. 평가 결과 및 활용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불충분(Unsatisfactory), 기본(Basic), 상(Good Quality), 최상(High Quality)의 4가지로 평가된다. 문항에 따라서는 기본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표 29〉, 〈표 30〉, 〈표 31〉는 종일제보육시설, 가정보육, 방과후보육의 인증 결과를 나타낸다. 5단계 심의를 다 마친 시설의 인증 통과 비율은 종일제보육시설은 92.2%, 가정보육 92.8%, 방과후보육 87.7%이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종일제 보육시설은 최고 Tasmania 94.7%, 최저 Northern Territory 86.8%로 나타났고, 가정보육센터는 Capital Territory 100%인 반면에 Northern Territory는 4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방과후보육 인증 비율도 최고 93.9%에서 최저 78.8%까지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표 29〉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후 인증통과 비율 (C=A/B)
전체	4274	363	4637	781	5418	92.2
Capital Territory	86	5	91	5	96	94.5
New South Wales	1732	155	1887	307	2194	91.8
Northern Territory	46	7	53	6	59	86.8
Queensland	990	70	1060	160	1220	93.4
South Australia	206	19	225	62	287	91.6
Tasmania	72	4	76	20	96	94.7
Victoria	797	57	854	170	1024	93.3
Western Australia	345	46	391	51	442	88.2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표 30〉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후 인증통과 비율 (C=A/B)
전체	283	22	305	22	327	92.8
Capital Territory	5	0	5	0	5	100.0
New South Wales	88	10	98	6	104	89.8
Northern Territory	2	3	5	0	5	40.0
Queensland	78	3	81	5	86	96.3
South Australia	15	0	15	0	15	100.0
Tasmania	10	1	11	1	12	90.9
Victoria	67	3	70	7	77	95.7
Western Australia	18	2	20	3	23	90.0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표 31〉 방과후보육 인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후 인증통과 비율 (C=A/B)
전체	2302	323	2625	613	3238	87.7
Capital Territory	73	6	79	7	86	92.4
New South Wales	600	78	678	194	872	88.5
Northern Territory	33	7	40	4	44	82.5
Queensland	489	32	521	97	618	93.9
South Australia	254	36	290	43	333	87.6
Tasmania	75	7	82	27	109	91.5
Victoria	670	128	798	188	986	84.0
Western Australia	108	29	137	53	190	78.8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의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평가인증제도는 강력한 보육시설의 질 관리 메커니즘이며 동시에 그 결과는 정부의 지원과 연결되어 있다. 즉, 호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아동보육급여 지원은 질 개선 및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서 보육받는 아동은 보육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새로운 보육 질 보장 체계의 개발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된 최근의 중요한 정책적 동향은 새로운 보육 질 보장 체계의 개발이다.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 장관은 2006년 5월 가정보육 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보육 질 보장 체계를 개

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발표된 개선 방향은 검토자 보육시설 방문 시 사전 미고지, 검토자의 위원회 고용,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시 점검, 서비스별 질 보장 체계의 일원화 등이다.

이에 따라서 이후 2006년 12월에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작성토록 하고, 연방정부 등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2007년 말 현재는 단일화된 평가 기준 등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질 보장 체계가 복잡하고, 보호 상황(care setting)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 및 연방정부의 인가와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보육기관에 규제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은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단일한 질 보장 체계의 마련, 특정 연령대 및 서비스에 부합하는 핵심 기준 마련,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방 및 주정부 인가 책임 강화, 좋은 수준의 질(Good Quality)을 기준으로 인증과 불인증을 결정하는 체계 확립, 서비스가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육시설에 요구함 등이다.

〈표 32〉 새로운 보육기관 평가기준 구성

단위: 개

영역	내용 개요	기준수
아동과의 관계	우호적 상호작용, 아동을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보호의 연속성 등	4
행동지침	효과적 행동 가이드, 스스로 행동 관리하도록 지원, 행동지침 전략	3
가족/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부모 오리엔테이션, 정보제공 등	4
보육 전문인력간 상호작용	상호 존중, 정보제공 등	4
철학	철학 있는 서비스, 철학이 서비스를 가이드	2
계획과 평가	계획수립, 통합적 경험과 환경, 평가의 영향, 평가서류 관리 등	4
환경	긍정적 상호작용 지원 환경, 효과적 감독 환경	6
아동 생활 기술	신뢰관계 지원 환경, 자립과 자긍심 지원, 다양성과 평등 존중, 다양성과 평등지원 조치	4
언어와 문해	언어와 문해 기술 고취, 생각의 표현 및 공유	3
아동 문제해결과 호기심	문제해결 능력 고취, 문제해결과 호기심 지지	2
창의적 표현	창의적 표현 증진 및 이에 대한 지원	2
신체활동	신체적 활동에 참여 및 이에 대한 지원 여건	2
개인 욕구	건강, 영양, 배변, 의복 및 편안함, 수면 욕구 충족	5
전문성 개발	인력의 전문성 개발 기회, 정보 접근 보장 등	4
질 관리	질 관리 기회 강화, 평가, 효과적 관리, 기록 및 서류 등	6
정책과 과정	서비스 실재에 대한 가이드, 정책의 효과성	2
인가 사항 준수	법과 규정 준수	1
계		58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7),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절차상의 변화를 보면, 먼저 현재 자체연구보고(Self Study Report)는 서비스 보고(Service Report)로 대체되고, 서비스 보고(Service Report) 제출간의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며, 모든 보육기관에 서비스 보고(Service Report) 제출 전에 인증 준비를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기준에서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고, 불인증된 시설은 이를 바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등이다.

평가기준도 단일화된 형태로 크게 달라진다. 2007년 말 현재 안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은 모두 17개 영역이다. 이는 아동과 관계, 행동 지침,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보육 전문인력간 상호작용, 철학, 계획과 평가, 환경, 아동 생활 기술, 아동 문제해결과 호기심, 창의적 활동, 신체활동, 개인 요구, 전문성 개발, 질 관리, 정책과 과정, 인가 사항 준수 등이다.

호주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보육 질 보장체계를 120개 보육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에 2008년 중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8년 회계연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체 보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맺는 말

호주는 1970년 이후 보육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육에 투자하는 비용 규모가 국가의 하 나이고 우리나라, 일본과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인증하는 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의 모 형이 되었다.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부모들이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 등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내 보육도 지원하고, 다기능 원주민 보육시설 이동서비스 등 소 외된 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인프라인 종일제보육시설은 공립기관이 1/3

정도이고 2/3이 사립시설인데, 특히 25% 정도는 영리회사의 체인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공급 특성에 따라 호주의 보육 지원 정책은 부모보조금을 통하여 부모 보육비용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부모보조금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육급여 지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시기에 차등을 두고, 또한 2004년부터 총 보육 비용의 30% 세제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모를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 특히 취업모 중심의 정책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차별 없이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율성은 돌아보게 한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추구하는 보육기관 보육의 질 보장 체계 역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7). Australian Social Trends 200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2007). Budget 2007~2008 at a Glanc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5). 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FaCS Annual Report 2004~2005.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6). A review of the approach to setting national standards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in Australian childcare services.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Vol. 4).

OECD(2006). Start Strong II.

OECD(2002). Country note: Australia.

URL: <http://www.facsia.gov.au>

URL: <http://www.abs.gov.au>

〈부표 1〉 종일제보육시설 평가기준

구분	내용
직원의 아동 및 동료와의 관계	1.1 직원은 따뜻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아동과 서로 상호작용한다. 1.2 직원은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1.3 직원은 각각의 아동과 존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유지한다. 1.4 직원은 아동 개개인의 배경과 능력을 존중한다. 1.5 직원은 모든 아동을 공정하게 대한다. 1.6 직원은 존중과 전문성있는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가족과의 파트너십	2.1 직원과 가족은 각각의 아동과 센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2.2 직원은 가족의 참여와 센터와의 관계형성을 이끌어낸다. 2.3 센터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가진다.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3.1 프로그램은 센터 철학을 반영한다. 3.2 아동 각각의 학습은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의 계획에 반영한다. 3.3 프로그램은 아동이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아동의 경험과 학습	4.1 직원은 아동이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2 직원은 아동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4.3 직원은 아동의 언어, 문학적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한다. 4.4 직원은 아동의 문제해결과 수학적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4.5 직원은 아동의 표현적 예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6 직원은 아동의 신체적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보호와 안전	5.1 직원은 아동을 보호한다. 5.2 직원은 언제나 아동을 관찰한다. 5.3 직원은 잠재적인 위험물, 식물, 사물에 아동이 접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5.4 센터는 건물과 기구들을 안전하게 한다. 5.5 센터는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구분	내용
건강, 영양, 복지	6.1 직원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한다. 6.2 직원은 효율적이고 음식물 안전과 위생학적 절차를 이행한다. 6.3 직원은 아동이 간단한 위생학적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6.4 직원은 화장실 사용, 기저귀 갈기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한다. 6.5 직원은 아동의 휴식, 수면, 안정의 욕구가 만족되도록 노력한다. 6.6 센터는 전염병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활동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한다.
질 향상을 위한 관리	7.1 센터 관리에 관한 안내(서면)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2 센터 관리에 관한 안내(서면)는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3 직원의 지침과 실재는 각각의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7.4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한다.

〈부표 2〉 가정보육센터 평가기준

구분	내용
상호작용	1.1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모든 유아에게 따뜻하고 친근감 있으며, 존중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1.2 조정기구 직원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이며, 아동의 배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1.3 가정보육사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이고 가족과 아동이 보육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1.4 가정보육사의 인성과 가족 여건은 긍정적인 가정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리적 환경	2.1 가정보육사의 집의 실내외 공간과 놀이 공간은 아동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안정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2.2 모든 아동은 다양한 종류의 흥미있는 사물과 장비에 접근할 수 있다. 2.3 조정기구가 사용하게 될 시설물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구분	내용
아동의 경험, 학습, 발달	3.1 가정보육사는 모든 아동의 흥미와 능력에 반응해 가정환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3.2 조정기구 직원은 가정이나 놀이 공간을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3.3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3.4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모든 아동들이 활기를 가지고, 사회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북돋아주어야 한다. 3.5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모든 아동들이 신체적 능력을 기르도록 장려한다. 3.6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모든 아동의 언어, 문학, 호기심, 수학적사고, 과학적 탐구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3.7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모든 아동의 창의적 표현을 도와주어야 한다.
건강, 위생, 영양, 안전, 복지	4.1 아동에게 제공된 환경은 안전해야 한다. 4.2 음식과 음료는 영양가 있고, 환경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4.3 모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4.4 기저귀 갈기, 화장실 가기, 씻기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 4.5 아동의 휴식, 수면, 안전에 관한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4.6 새로 입법된 아동 보호 관련 조항은 계속해서 시행해야 한다.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	5.1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의 구인, 선발, 교육과정은 질 높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5.2 계획은 최근의 경험을 모니터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실히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포함된다. 5.3 전문적인 능력 개발의 기회는 가정보육사나 조정기구 직원, 임무 수행에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5.4 계획은 직업상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킨다.
관리와 행정	6.1 관리 과정은 윤리적이고 적절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6.2 계획은 투자책임자와 공동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6.3 계획은 기록 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6.4 계획은 간단하고 명료한 지적사항과 불만사항들을 다루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6.5 가정보육사와 조정기구 직원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이나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를 쌓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부표 3〉 방과후보육 평가기준

구분	내용
아동존중	1.1 직원은 아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1.2 직원은 아동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존중하고, 각각의 아동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킨다. 1.3 아동은 공평하게 대우받는다.
직원 상호작용 및 아동과의 관계	2.1 직원은 각각의 아동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직업의식, 팀워크와 상호존중을 보여준다. 2.2 직원은 반응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아동에게 따뜻하고 친근감있는 행동 방식을 알려준다. 2.3 직원은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가족과 지역사회	3.1 가족의 흥미를 반영하는데 반응적이며, 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족의 참여를 유도한다. 3.2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3.3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적이다.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4.1 프로그램은 서비스 철학의 반영하고, 서비스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4.2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의 욕구, 흥미, 능력을 충족시킨다. 4.3 직원은 계획하고 경험하는 것을 아동과 협력하여 일한다. 4.4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놀이와 발달	5.1 프로그램은 아동이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5.2 프로그램은 물리적 환경을 뒷받침한다. 5.3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5.4 프로그램은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발달에 도움을 준다.
건강, 영양, 복지	6.1 균형잡힌 건강한 식단을 추구한다. 6.2 직원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음식물 다루기와 위생학적 절차를 이행한다. 6.3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한다. 6.4 아동 개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보호, 안전	7.1 보호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와 절차를 가진다. 7.2 아동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추구한다. 7.3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킨다.

구분	내용
운영관리	8.1 관련 법규 안에서 서비스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8.2 관리자와 직원은 서로를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8.3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 효율적인 전략을 가진다. 8.4 효율적인 고용과 교육과정, 직원을 위한 과정의 안내 절차를 가지고 있다. 8.5 직원을 위한 전문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촉진시킨다. 8.6 건의 절차를 강화한다.

서문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언론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언론학)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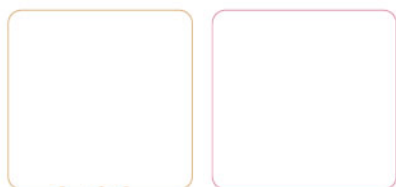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3

호주의 보육정책

발행인 • 이옥
발행처 • 육아정책개발센터
편역 • 서문희
발행일 • 2007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730-707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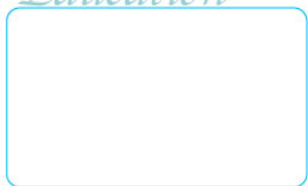
ISBN 978-89-92396-21-9

정가: 5,000원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Tel, 02-730-7070 Fax, 02-730-3313



ISBN 978-89-92396-21-9